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13
------	------

2025. 3.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김형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2.2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 1. 제안이유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울시립미술관이 보유한 미술품 3,699점 중 750점은 진품 보유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가가 본인 작품을 기증 혹은 판매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진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소장가, 기관·단체, 화랑 등을 통해 구매한 작품들은 진품 보증서가 없다면 ‘위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조례 내에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만에 하나 소장 작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제3항)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중 진품보증서가 없는 작품에 대한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음.

이는 시장이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고,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개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u>

**(2) 소장 미술품의 진품보증서 관리 현황**

-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진품 유입을 위한 내부규정<sup>1)</sup>을 2010년도에 제정하였으며,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보증서<sup>2)</sup> 및 진위감정서<sup>3)</sup>를 징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전체 소장 작품 3,727점 중 약20%에 해당하는 742점<sup>4)</sup>의 작품이 진품 보증서 또는 진위감정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3) 개정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 등에서 진품을 소장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없으나,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sup>5)</sup>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작품계약 등) ② … 진품의 유입을 위해 작가 본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경우, 진품보증서(규정 제7호 서식)를 징구할 수 있으며, 작고 작가일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

2) 작가 본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경우 직접 발급

3) 작고 작가일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발급

4) 2025년 1월 22일 기준

따라서 시장이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고,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적합함.

- 동 개정조례안의 대한 집행부의 수정 의견 중, ‘진품보증서’ 및 ‘진위 감정서’를 상위법에서 규정<sup>6)</sup>하고 있는 ‘진품보증서’와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수정제안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제 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생략) <u>&lt;신 설&gt;</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소장 작품에 대한 진품보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작고 작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b>진품증명서</b> ----- ----- ----- ----- <b>이에 갈음하는 증명서</b> ----- -----.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정 의견은 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품의 위작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감안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원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미술진흥법」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미술진흥법」 제16조(소비자 보호)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전체 소장 작품 3699점 중 750점<sup>7)</sup>의 진품보증서가 없으며, 이 중 57점은 구입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아 위작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2010년 구매 작품 6점 및 2012년 구매 작품 2점은 진품 유입을 위한 내부규정이 시행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진품보증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작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보유하는 것은 관리 및 보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이며 이를 전시하는 것은 공공미술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장 작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확보를 권고함.

다만, 작품의 손상 및 감정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감정이 불가능한 소장 작품의 경우에는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에 대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 2024년 11월 기준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동 개정조례안은 작품의 감정 방식을 논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행부의 검토 의견 중 ‘다양한 감정 방식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음
- 답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하겠음.
- 질의: 동 개정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강행규정에서 책무 부여로 완화하여 수정 발의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기 바람.
- 답변: 그렇게 하겠음.

## V.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관련 상위법에서 ‘진품보증서’ 및 ‘진위 감정서’를 ‘진품보증서’와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규인 원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 작품의 손상 및 감정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소장 미술 작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

## 나. 수정주요내용

- 「미술진흥법」의 명시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안 제24조).
-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24조).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13
----------	------------

제안년월일 : 2025. 2. 27.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관련 상위법에서 '진품보증서' 및 '진위 감정서'를 '진품보증서'와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규인 원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
- 작품의 손상 및 감정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소장 미술 작품의 진품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

### 2. 수정주요내용

- 가. 「미술진흥법」의 명시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안 제24조).
- 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24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소장 작            품에 대한 진품보증            서를 구비하여야 하            며, 작고 작가의 작            품일 경우에는 공인            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③ 시장은 소장 미            술작품에 대한 진품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u>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생략) <u>&lt;신설&gt;</u>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